

July
2025

NEWSLETTER

기업자문 그룹 | M&A Group

CONTACT



변호사 구대훈

T: 02.772.4805

E: koo@leeko.com

변호사 김경천

T: 02.772.4827

E: kyungchun.kim@leeko.com

변호사 김태정

T: 02.772.4915

E: taejung.kim@leeko.com

변호사 윤근형

T: 02.772.5968

E: geunhyung.yoon@leeko.com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 3. 14.자 뉴스를 통해 안내해드렸던 상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84 96)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되었으나, 2025. 6. 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새 정부 여당이 일부 조항을 추가 및 보완하여 다시 추진한 상법 일부 개정안(개정법)이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i)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ii)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iii)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 제한 확대, (iv) 사외이사를 같은 독립이사 선임 및 의무 선임 비율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각 시행 시점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조항은 공포일에 즉시 시행되고,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 제한 확대, 독립이사에 관한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조항은 2027.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를 추가하였고(개정법 제382조의3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이사가 회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업무상 배임죄의 폐지 여부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입법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의 조직재편이나 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시 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를 기존보다 충실히 거치고, 관련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고,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물적 분할 후 분할자회사의 상장 사례, 합병비율의 불공정 주장 사례, 특정인에 대한 유상 증자 또는 자사주 처분, 소수주주 축출 거래 등 그 동안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회사의 조직재편이나 자본거래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들로서는 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며, 특히 상장회사 등 소액주주들의 문제제기 위험성이 높은회사들의 경우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이 공정하게 대우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문언만으로는 이사가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충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는 학계·실무계의 논의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 개정법의 내용

개정법은 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현행 상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64조), 주주총회 개최지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온라인상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하여 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집지에서의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 개최

개정법상 전자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로 정의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따라서 개정법은 전자주주총회 단독 개최가 아닌 소집지에서의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형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격 출석한 주주의 직접 출석 간주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3항, 제4항).

3)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사항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개정법 제542조의14 제5항),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5 제4항, 제5항).

4)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의무가 부여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전자주주총회의 내용 및 운영의 세부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제6항, 제542조의15 제6항),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상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인 조치에 관한 준비도 중요할 것이고, 특히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행시기인 2027. 1. 1.에 맞추어 적시에 이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대규모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 제한 확대

■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른바 **3% 제한**).

개정법은 사외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3% 제한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이번 개정은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감사위원회를 통한 기업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동 개정에 따라 최대주주와 2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 내지 갈등 발생, 헤지 펀드 또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캠페인 등이 증가하여 경영권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규모상장회사로서는 향후 감사위원 선임시 2대주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소액주주 및 일반 투자자 등의 찬성 의결권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 또는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4.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 및 의무 선임 비율 확대

■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에서는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모두 필요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제382조 제3항),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42조의8 제1항 본문).

개정법에서는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독립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제542조의8 제1항 본문에 따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8 제1항).

개정법상 독립이사란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는 현행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개정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보며, 다만, 개정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1년)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독립이사에 대한 의무선임 비율 상향에 대하여는 공포일부터 2년째 되는 날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로 하여금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즉 독립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의무 선임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법 제안이유에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 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명칭 변경에 불과한 것인지 독립이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인지, 독립이사의 구체적인 의미 및 그 독립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학계·실무계의 논의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과정에서 당초 원안에 있었던 (i) 대규모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ii)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수 확대(1인 이상 → 2인 이상)는 여야간 합의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추후 입법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은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